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박대출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9279
----------	-------

발의연월일 : 2026. 6. 16.

발 의 자 : 박대출 · 윤영석 · 김성원  
권영진 · 김용태 · 배준영  
박수영 · 이인선 · 김정재  
김상훈 의원(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이전 공공기관이 본점 또는 주사무소를 혁신도시 또는 세종특별자치시로 이전하기 위하여 종전부동산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양도차익에 대해서는 해당 양도차익에서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법인세법」에 따른 이월결손금을 뺀 금액의 범위에서 계산한 금액을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과세특례를 규정하고 있는데, 그 일몰기한이 2026년 12월 31일까지임.

그런데 국민경제의 지속 가능한 성장과 지역의 균형발전을 위하여 위 과세특례의 일몰기한을 연장할 필요가 있음.

이에 공공기관이 혁신도시 등으로 이전하는 경우 법인세 등 감면의 과세특례 일몰기한을 2026년 12월 31일에서 2029년 12월 31일로 3년

연장하려는 것임(안 제62조제1항).

법률 제 호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2조제1항 전단 중 “2026년 12월 31일”을 “2029년 12월 31일”로 한다.

### 부 칙

이 법은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